

21.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: 2019년 9월 6일
- 제안자 : 박갑상, 강성환, 김대현, 김원규, 김재우, 윤영애,
하병문 의원
- 회부일자 : 2019년 9월 9일
- 상정일자
 - 대구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
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19년 9월 19일) : [원안가결](#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갑상 의원)

제안이유

- 택시 공동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고, 택시운송사업자의 합병 및 양도·양수 등 택시업계 구조조정을 통한 운송원가 절감,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및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- 택시공동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
(안 제3조제7호)
-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양도·양수 등을 통한 택시업계 구조조정또는 경영개선 사업(안 제3조제9호)
-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택시운송가맹사업을 도입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(안 제3조제10호)
-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키움사업을 지원함
(안 제3조제11호)

□ 참고자료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조례안 참조
- 관계법령 :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있음
- 참고자료 :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김학수)

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

택시업계 경영 및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.

-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범위를 규정하고, 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(융자)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3조는 재정지원 방식을 기존 보조에서 보조 또는 융자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사업성격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.
- 안 제3조 제7호, 제9호, 제10호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택시공동차고지 설치사업, 택시업계 구조조정 또는 경영 개선사업,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명시한 것은,
- 대형 플랫폼 택시 도입, 부가서비스를 활용한 택시운송가맹사업 추진 등 급변하고 있는 택시업계 환경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긍정적 조치로 사료됨.
- 한편, 택시공동차고지는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재정지원을 위한 지원기준과 관리방안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임.
- 또한 같은 조 제11호에서 이직율이 높은 일반(법인) 택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 키움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.

[택시근로자 희망키움 지원사업]

- 필 요 성 : 타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률 증가
 - 지원대상 : 894명 정도(5년이상 장기근속 택시근로자)
 - 사업내용 : 일반(법인)택시 근로자 장기근속수당 지원
 - 5~9년 장기근속자(5만원), 10~14년 장기근속자(10만원)
- ※ 시 재정상황을 고려, 연차별, 근속기간별 차등지원 검토

○ 다만, 안 제3조제10호에서 규정한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해야 할 것임.

붙임

택시근로자 처우개선 관련 타 시도 지원사례

< 부산시 >

- 사업명 / '19년 예산액 : 택시종사자 희망키움사업 / 12억원
- 사업근거 :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제3조 8호
(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키움사업)
- 지급대상 : 법인택시 신규종사자(1년간), 10년이상 근속한 택시종사자
1천명 선정 지원
 - * 최근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무사고인 경우만 지원
- 지급금액 : 월 5만원 ※ 지원조례 명문규정 신설('17. 9. 12.) 후 시행

< 인천시 >

- 사업명 / '19년 예산액 : 인천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사업 / 미반영
 ※ '18년 예산에 12억원 반영되었으나, 보조금심의위원회 부결(타 운수종사자, 자영업자 등 영세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남)로 전액 삭감.
- 사업근거 :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제10조 5호
(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지원)
- 지급대상 : 법인택시 신규종사자(1년간), 7년이상 근속한 운수종사자
 * 법규위반, 사고자, 행정처분 받은적 있는 운수종사자는 1년 경과후 지원
- 지급금액 : 월 5만원

< 경기도 >

- 사업명 / '19년 예산액 :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수당 / 92억 9천만원
- 사업근거 :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의2
(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)
- 지급대상 : 일반택시(법인택시) 운수종사자 전원에게 지급
- 지급금액 : 월 5만원 ※ 지원조례 명문규정 신설('18. 7. 17.) 후 시행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 본 개정조례안 제3조 제11호에 운수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키움사업이 추가되었음. 개요는 무엇이며,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?	○ 희망키움사업은 장기근속 택시근로자에게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별로 지원규모가 다른 만큼,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.
○ 안 제3조는 재정지원 방식을 기존 보조에서 보조 또는 융자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인데, 이렇게 되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인지?	○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지는 않고 금융기관을 알선해주는 방식이 될 것임.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